

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(제2조제2호 관련)

구분	배정기준
1. 교장 및 교감	가.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.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, 학교가 통·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
2. 교사	가.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‘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’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, 배정 결과를 해당 시·도의 전년도 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산출하고, 증감해야 할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증감(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하며,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나.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, 해당 시·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

비고

1.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.

▪ 시·도별 배정 교사 정원 = $\sum(\text{학생 수 구간}^* \text{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}^{**} \times \text{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시·도별 공립초등학교 총 수})$ (※ 전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,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

※ 정원이 남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,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·도의 전년도 초등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한다.

※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.

* 학생 수 구간: 교육부장관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구간을 정하여 공립학교를 분류한 것

**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공립초등학교별 교사 수 = 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소속 교사 총 수/해당 학생 수 구간에 속하는 전국 공립초등학교 총 수

2. 제2호나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, 시·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*과 전년도 신규 교사 선발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* 정원효율화 실적: 전년도 일방전입을 받은 교사 수, 전년도 학교 통·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,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 시 특채한 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·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